# 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4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|---|
| 기 관 | 현대차증권㈜ |

## 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현대차증권㈜에 대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한 '적합성원칙 위반', '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'으로 과태료 570백만원 및 과징금 14백만원을 부과

○ **(수정심의)**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('21.5.26. 금융위 의결)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('21.3.25. ~ 9.24.) 중 발생한 위반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, '적합성원칙 위반'과 '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'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

| 제재대상 | 금전제재 | |
|---|---|---|
| | 원안 | 수정안 |
| 현대차증권㈜ | 과태료 570백만원 부과<br>과징금 14백만원 부과 | 과태료 부과 면제<br>과징금 부과 면제 |